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광주지방검찰청

공보담당자 노진영

전화 062-231-4330/ 팩스 0502-193-7661

## 보도자료

2023. 4. 26.(수)

### 제 목

## 검찰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환자 40명에게 대리수술한 의사 등 4명 불구속기소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(제11조 제2항 제1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□ **광주지검 형사3부**(부장검사 박성민)는 최초로 경찰에서 고소인 1명에 대한 무혐의 이의신청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보완수사한 끝에, 환자 40명에게 보형물 삽입 등을 대리수술로 진행한 사실을 밝혀 내, 4. 19. 의사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음

□ 이 사건은 최초로 환자 1명의 고소로 시작한 사건을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으나, 위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에서 송치받아, 환자들에 대한 출장 조사, 진료기록부 분석,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한 결과

- ▶ '19.~'20. 의료기기상,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들이 의사와 공모하여
- ▶ 고령의 환자 등 40명으로부터 ▶ 수백만원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고
- ▶ 보형물 삽입 등 대리수술을 진행한 전모를 밝혀낸 것임

□ 검찰은 앞으로도 대표적인 민생 침해범죄인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엄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

# I

## 피고인

- A(72세, 의사 면허 소지자)
- B(60세, 간호조무사)
- C(41세, 간호조무사)
- D(42세, 의료기기상)

# II

## 공소사실 요지

- A는 의사 면허가 있으나 고령과 건강상의 문제로 어렵고 섬세한 수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, 수술을 합법으로 가장하기 위해 의사 면허만 둔 채 수술방에 들어가기만 할 뿐 뒤에 서 있고,
  - B는 ○○의원의 실질적 운영자로 수술 상담 및 수술을 직접 시행하고, C는 수술 보조를, D는 수술 시행을 하는 방식으로,
  - 2019. 2. ~ 2020. 11. 광주 소재 ○○의원에서 40명의 환자들에게 남성 수술을 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영업으로 함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]

# III

## 수사 경과

- '19. 11.~'22. 11. 사경 수사 진행하였으나 불송치 반환 후 고소인의의신청하여 검찰 송치

※ 수술 이후 후유증을 앓고 있던 환자 1명이 사경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, '22. 11. 사경에서 혐의없음 후 불송치, 검찰에서 검토 후 기록을 사경에 반환하였으나, 이후 고소인의의신청을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음

● '22. 12.~'23. 3.           검찰 직접 보완수사

- ▶보형물삽입술을 받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 대한 거주지 출장조사,  
▶피의자들, 환자 등 대질조사, ▶수술 부작용 환자들을 추가로 치료한 병원  
에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 확보·분석 ▶동종 범행 판결문 검토 등 실시

● '23. 3. 24.            피의자 A~D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
(부정의료업자)죄로 인지

● '23. 3. 30.~4. 5. 피의자 4명 구속영장 청구하였으나 법원 기각

※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

● '23. 4. 19.            피의자들 불구속 기소

## IV 수사 의의

- 의사 아닌 자의 대리수술 사건은 수술실에 CCTV가 없는 등 수술자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적발이 어려우며,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의사 면허 박탈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끝까지 부인하는 등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사건인 반면,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매우 큼

- '협의없음'으로 문힐 뻔한 이번 사건을 검찰의 끈질긴 보완수사로 전말을 밝힘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단한 것임

※ 본 사건에서도, 일부 환자의 경우 수술 이후 수술 부위 염증 발생 및 다른 장기로 세균 감염 전이, 재수술, 그로 인한 가정생활 파탄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음

- 앞으로도 검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 민생침해범죄인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하겠음 ☒